



2015년 6월 개정

Safe
ENVIRONMENT
protecting the young & vulnerable



시애틀 교구청
710 9th Avenue | Seattle, WA 98104

미성년 이나 노약자
의 성폭력이나 학대
가 의심되는 경우의
보고 절차에 관하여



시애틀 교구청
성직자, 관계
자 그리고 봉
사자 지침



교구청 방침에 의하면:

시애틀 교구청은 신자들과 성직자 그리고 교회 평신도 사목회 간의 성스러운 신의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각자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학대, 성적인 불법행위 및 성희롱은 폭력적이고 해로운 행동이며, 이런 행동들은 교회 또는 나아가 사회에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사목자의 염려, 연민, 치유와 고백성사들은 가톨릭 공동체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애틀 교구청 관계자로 인해 상처를 받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교구청은 그것을 올곧고, 세심하게 받아드려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들이 교회 관계자나 봉사자로 부터 성학대나, 폭력 또는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이나 노약자들을 대하는 기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seattlearchdiocese.org/SEP/Default.aspx
또는 교구청 핫라인

1-800-446-7762 로 문의 하십시오.

Safe
ENVIRONMENT
protecting the young & vulnerable



학대의 정의는?

학대란 신의를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미성년자 (18세 미만) 또는 노약자 또는 정신지체자에게 피해입히거나 겁박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의 네가지 기본 형태는?

1. **물리적학대**는 성인이 아동이나 노약자를 사고가 아닌 일로 해쳤을때.
2. **방치**는 아동이나 노약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방치하거나 등한시 함으로 해서 해를 입히는것.
3. **감정학대**는 성인이 아동이나 노약자를 언행 또는 감정을 통해 학대하는것 .
4. **성학대**는 아동이나 노약자와 연장자 또는 유력자 간에 성접촉이 관련 됩니다. 이것에는 직접적인 성접촉과 함께 아래와 같은 다른 행동들이 포함됩니다:
 - 부적절한 언행을 이용한 자극
 -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샤워 또는 노골적인 사진의을 통한 노출
 -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적인 장면 노출

노약자란?

- 자기 스스로를 돌볼수 없는 60세이상
- 장애가 있는 사람
- 18세 이상 법적인 보호자가 있는 사람
- 의료 전문인, 호스피스 또는 가정의료방문기관으로 부터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워싱턴주 법에 의해서 학대가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48시간안에 보고 해야 합니다. 교사, 의사, 상담사, 경찰, 사회복지사, 의료전문인들은 학대가 의심되면 워싱턴주법 (RCW 26.44.030)에 의거하여 필히 보고 해야 합니다.

시애틀 교구청 지침에 의하면 아래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은 필히 지침에 따라 아동이나 노약자 학대를 보고 해야 합니다:

사제 (교백성사 외)

부제

직원:

- 학교 교직원
- 미성년이나 노약자와 일하는 목회자
 - 어린이 성가대장
 - RCIA 와 RCIC 강사
 - 종교 교육 관계자
 - 청소년 사목담당자

봉사자:

- 교리교사
- 코치
- 스카웃 지도자
- 청소년 지도자
- 이밖에 지속적으로 미성년이나 노약자와 접촉을 하는 자

누구든지 옳은 신념으로 워싱턴주 사회복지부서 (DSHS)나 담당기관에 보고 하는 사람은 보복받을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 부터 보호 받습니다.

해야 할일:

만약 아동이나 노약자가 학대 받았다고 의심될때는 적절한 법률 집행 기관이나 워싱턴주 사회복지부서 (DSHS) 핫라인 1-866-END-HARM (1-866-363-427 청각장애인 사용가능)에 48시간 안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피해자의 정보를 많이 알아 두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이름
- 나이 (대강의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 부모나 보호자의 이름
- 학대의 종류
-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만약 누구든지 옳은 신념을 가지고 신고를 했을 경우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생명이 위급할 경우 911로 전화 합니다.

참고: 만약 가해자가 교구청 관계자 - 사제, 부제, 교사, 직원 또는 학교 또는 교회 봉사자가 연류 되었다면 시애틀 교구청 핫라인에 48시간 안에 보고 합니다.

시애틀 교구청 핫라인: 1-800-446-7762

교구청 주소:

710 9th Avenue, Seattle, WA 98104